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956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이A
검 사 정수정
변 호 인 변호사 강종률
판 결 선 고 2011.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피해자 ★ 공업사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3가합5842)에 대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7억 3,600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7845), 2004. 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7,30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은행,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04. 11. 17.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4나3949, 3956(참가) 판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이 이미 2001. 11. 29. 청구금액 2억 원의, ◇은행은 2002. 8. 30. 청구금액 180,355,487원의 각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1카단36212, 2002카단29944)를 해 둔 상태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은행과 ◇은행은 2005. 1. 14. 위 승소금액 157,309,430원에서 소송비용 49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359,430원 중 82,359,430원은 ☆은행이, 7,000만원은 ◇은행이 각 지급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결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로써 ☆은행과 ◇은행의 위 가압류는 실현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에 기한 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2. 위 판결에 기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347,481,44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12.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9626)을 받아 피해자의 각 은행예금 계좌를 압류한 후 2010. 1. 18.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140-008-733063)에서 400,73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강매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 12. 피해자

소유의 부산 사하구 ◆동 ○○ 공장용지 15265.6㎡,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경매결정(부산지방법원 2010타경711)을 받아 채권 347,080,716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윤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C1, 윤C 진술부분)

1. 임C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윤C 진술부분

1. 판결문 사본, 합의서, 각 영수증

1. 각 소송진행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각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탄원서, 증거서류 추가 제출서, 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주경태 _____